

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5일

거 창 군 수

1. 목 적

-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,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
2. 사업개요

- 신청기간 : 2025. 11. 25.(화) ~ 12. 26.(금) 까지
- 접수처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
- 사업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※ 친환경인증 농가는 2026년 1월에 '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(보조 70%)'으로 신청 바람 (단, 녹비종자는 친환경인증농가 신청 가능)
- 사업내용 :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
 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
 - 녹비종자(6종) : 헤어리베치, 청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, 연맥
- 지원한도
 - 유기농업자재(ha당) : 일반농가 100만원
 - 녹비작물종자(ha당) : 헤어리베치 60kg/ha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50kg, 연맥(조생, 중만생종) 160kg

4. 지원제외

-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 및 작물생육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·부숙유기질비료
-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(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)
-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「농업·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」 [별표1]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

= [별표 1] 유기물 함량 상한기준(g/kg) =

- 일반작물 : 논 30, 밭 45, 과수원 53, 시설재배지 53,
- 특이작물 : 토란·차나무 50, 유채 60, 인삼 30, 블루베리 기준없음

-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·작물생육용·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,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,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"유기질 비료"를 50% 이내로 지원
- '26년도 경관보전직접직불제,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본 녹비작물종자 지원 신청 불가

4. 제출서류

구 분	유기농업자재	녹비작물 종자 지원
공 통	①신청서(아그릭스 출력) ②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아그릭스 출력) ③서약서(붙임 1)	
추 가	④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(추후 제출 가능)	④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(반드시 제출) ⑤인삼경작자가 수단그라스 신청 시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(붙임 2)

5.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 유무 확인방법

○ 토양검정 받은 농지

-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(☎940-8239)에서 농가명, 필지 주소를 통해 발급 가능 → '25년 또는 '24년 검정결과 유무 확인

○ 토양검정 받지 않은 농지(토양검정 처방서 無)

- 농산물안전분석실(☎940-8237, 8238)에 문의하여 토양검정 의뢰
- 토양검정 소요기간 7일 정도
- 녹비작물 종자 신청농가는 사업신청 기간 내 반드시 토양검정결과 처방서 제출해야 함 (단, 수단그라스 지원 농가는 사후 제출 가능)
- 유기농업자재 신청농가는 '26년 6월까지 사후 제출 가능함
-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
-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인접 필지는 1개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

6. 문의처 : 읍·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(☎940-8203)

서 약 서

○ 성명(생년월일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,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·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, 제재 부과금 부과,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시장, 군수, 구청장 귀하

[불임2]

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

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

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:

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:

주소 :

경작예정내용

신고번호 :

경작지주소	식재예정면적	식재년도	식재구분 (직파/이식)	임차구분

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※ 확인서 용도 :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

○ ○ 인삼농업협동조합장

직원